

의안 번호	248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 사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,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시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취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적격성·영예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개정, 정 부 포상 기준을 따르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)
-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- 포상시기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(안 제11조제2항)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 신 설(안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의 적격성·영예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장의 인사위원회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, 정부포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및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, 포상시기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, 안 제14조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 신설 등임.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 제반 규정 검토한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
의 내부규정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